

등록금 심의 위원회 규정

제정 2013. 05. 09.
8차 개정 2022. 04. 20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, 사립학교법 제29조, 제31조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금심의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3.11.12)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.

1. 해당연도 등록금 책정 및 심의
2. 예·결산 심사·의결
(전문개정 2013.11.12)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15인으로 구성하여 총장이 위촉하며,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,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 미만인 되도록 하고, 관련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하여야 한다. (개정 2019.12.30., 2021.04.16.)

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직원 7인 : 부총장, 기획처장, 학생취업지원처장(단, 결산 심사시에는 행정지원처장)의 당연직 위원 3인과 과반수 교수단체가 추천한 2인, 교섭대표 노동조합(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)이 추천한 2인 (개정 2013.11.12., 2019.06.25., 2019.12.30., 2021.04.16., 2022.02.18., 2022.04.20)
2. 학생대표 5인 : 총학생회(또는 중앙운영위원회)가 추천한 본교 재학생 5인 (개정 2017.2.15., 2019.12.30)
3. 관련 전문가 1인 : 총장이 위촉한 교육 관련 외부 전문가 1인
4. 학부모 또는 동문 2인 :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로 총장이 위촉하는 학부모 또는 동문 2인 (개정 2021.04.16.)
5.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추천을 요청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추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총장이 위촉할 수 있다. (호 신설 2019.12.30.)

③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며,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④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간사를 두며, 간사는 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한다. (개정 2013.11.12., 2019.12.30)

제4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,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당연직과 각 구성원 단체의 대표는 보직 및 대표의 재임기간으로 하고, 임기 중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새로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 (개정 2019.12.30.)

② 결원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5조(회의) ①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거나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5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(개정 2018.03.19.)

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(개정 2018.03.19.)

제6조(회의록) ①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 요지,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

록을 작성·보존하여야 한다.(개정 2018.03.19.)

② 위원장은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해당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개월 간 공개하여야 한다.(개정 2018.03.19.)

제7조(실무위원회) ① 위원회는 등록금 책정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정한다.

제8조(자료제공) 위원회는 등록금 책정 관련 자료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, 총장은 이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.

제9조(운영세칙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263, 2013.5.9)

이 규정은 2013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780, 2013.11.12)

이 규정은 2013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52, 2017.2.15.)

이 규정은 2017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146, 2018.3.19.)

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330, 2019.06.25.)

이 규정은 2019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640, 2019.12.30.)

이 규정은 201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234, 2021.04.16.)

이 규정은 2021년 04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109, 2022.02.18.)

이 규정은 2022년 0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257, 2022.04.20.)

이 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